그란알레 분양광고 (송도국제업무단지 G5-11블록 판매시설)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제2026-도시건축과-분양신고-6호 (2026. 8. 18.)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2025-도시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 (2025. 10. 2.)]
- 본 판매시설의 최초 분양광고일은 2026.08.19.이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인터넷 청약으로 공개모집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점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 본 판매시설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당 총 1건[묶음군 1건 또는 개별호실(호실 선택불가, 무작위 추첨) 1건]만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사전 통보 없이 무효 처리됩니다.
- 청약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 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판매시설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급대상물

구분	내용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15 (G5-11BL)
대지면적	• 대지면적 : 19,788.93㎡ (사업부지 면적 : 20,242.20㎡ / 제척면적 : 453.27㎡)
대지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 준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업무단지) •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 중점경관관리구역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여부	• 해당 없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건축물 연면적	• 전체 77,465.80㎡ (판매시설 : 8,612.62㎡)
건축물의 용도	• 판매시설, 공동주택(아파트)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2층~지하1층(지하주차장·기계·전기실 등), 지상1층~지상2층(판매시설), 지상3층~지상20층(공동주택)
공급규모	• 판매시설 지상1층~지상2층, 82실
주차대수	• 전체 622대 (판매시설 87대, 공동주택 535대)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확인함 •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내진능력 내진 Ⅰ등급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본 사업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겸 수익자 송도국제도시개발(유), 토지를 수탁받은 매도인 겸 수탁자(신탁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 및 시공업체 ㈜포스코이앤씨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공급(분양)대금을 매도인 겸 수탁자(신탁회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가 관리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관련)
입점시기	• 2029년 8월 예정 (정확한 입점 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

용도	층	군	호실명(승인기준)	호실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비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	소계			
판매시설	1층	1군	1101-1	35.6700	4.8742	13.5493	30.9955	49.4190	85.0890	21.7363	묶음군
판매시설	1층		1101-2	35.9600	4.9139	13.6595	31.2475	49.8209	85.7809	21.9130	
판매시설	1층	9군	1101-3	32.4300	4.4315	12.3186	28.1801	44.9302	77.3602	19.7619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1-4	35.6100	4.8660	13.5265	30.9434	49.3359	84.9459	21.6998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1-5	37.5700	5.1339	14.2710	32.6465	52.0514	89.6214	22.8941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1-6	33.6100	4.5927	12.7668	29.2055	46.5650	80.1750	20.4810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1-7	44.7400	6.1137	16.9946	38.8769	61.9852	106.7252	27.2633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2군	1101-8	53.1900	7.2684	20.2044	46.2196	73.6924	126.8824	32.4125	묶음군
판매시설	1층		1101-9	39.5300	5.4017	15.0156	34.3497	54.7670	94.2970	24.0885	
판매시설	1층	9군	1101-10	42.6200	5.8240	16.1893	37.0347	59.0480	101.6680	25.9715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1-11	44.8100	6.1232	17.0212	38.9377	62.0821	106.8921	27.3060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1-12	58.3100	7.9680	22.1492	50.6686	80.7858	139.0958	35.5325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2-1	47.0400	6.4280	17.8683	40.8755	65.1718	112.2118	28.6649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2-2	44.9800	6.1465	17.0858	39.0855	62.3178	107.2978	27.4096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2-3	43.5600	5.9524	16.5464	37.8516	60.3504	103.9104	26.5443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2-4	44.3800	6.0645	16.8579	38.5641	61.4865	105.8665	27.0440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2-5	44.6000	6.0945	16.9414	38.7553	61.7912	106.3912	27.1780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2-6	44.6000	6.0945	16.9414	38.7553	61.7912	106.3912	27.1780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2-7	44.6000	6.0945	16.9414	38.7553	61.7912	106.3912	27.1780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2-8	44.8000	6.1219	17.0174	38.9291	62.0684	106.8684	27.2999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2-9	44.8000	6.1219	17.0174	38.9291	62.0684	106.8684	27.2999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2-10	44.8000	6.1219	17.0174	38.9291	62.0684	106.8684	27.2999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2-11	44.8000	6.1219	17.0174	38.9291	62.0684	106.8684	27.2999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2-12	44.8000	6.1219	17.0174	38.9291	62.0684	106.8684	27.2999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2-13	44.5800	6.0918	16.9338	38.7379	61.7635	106.3435	27.1658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3-1	50.6100	6.9158	19.2243	43.9777	70.1178	120.7278	30.8404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3-2	44.7500	6.1150	16.9984	38.8856	61.9990	106.7490	27.2694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3-3	32.7800	4.4793	12.4516	28.4842	45.4151	78.1951	19.9752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3-4	39.2600	5.3648	14.9130	34.1151	54.3929	93.6529	23.9240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3군	1103-5	40.5000	5.5343	15.3840	35.1926	56.1109	96.6109	24.6796	묶음군
판매시설	1층		1103-6	33.6800	4.6023	12.7934	29.2663	46.6620	80.3420	20.5237	
판매시설	1층	9군	1103-7	33.5900	4.5900	12.7592	29.1881	46.5373	80.1273	20.4688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3-8	32.9000	4.4957	12.4971	28.5885	45.5813	78.4813	20.0484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3-9	42.9000	5.8622	16.2957	37.2780	59.4359	102.3359	26.1421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3-10	48.3900	6.6124	18.3811	42.0486	67.0421	115.4321	29.4876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3-11	48.5100	6.6288	18.4266	42.1529	67.2083	115.7183	29.5607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3-12	60.5300	8.2714	22.9925	52.5977	83.8616	144.3916	36.8854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4군	1103-13	50.7100	6.9295	19.2623	44.0646	70.2564	120.9664	30.9013	묶음군
판매시설	1층		1103-14	39.7100	5.4263	15.0839	34.5061	55.0163	94.7263	24.1982	
판매시설	1층	9군	1103-15	44.0000	6.0125	16.7135	38.2339	60.9599	104.9599	26.8124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3-16	43.8600	5.9934	16.6603	38.1122	60.7659	104.6259	26.7271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3-17	42.8500	5.8554	16.2767	37.2346	59.3667	102.2167	26.1116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3-18	41.4100	5.6586	15.7297	35.9833	57.3716	98.7816	25.2341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4-1	35.6300	4.8688	13.5341	30.9608	49.3637	84.9937	21.7119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4-2	35.4000	4.8374	13.4468	30.7609	49.0451	84.4451	21.5718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4-3	42.5100	5.8089	16.1475	36.9392	58.8956	101.4056	25.9044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4-4	41.5300	5.6750	15.7753	36.0876	57.5379	99.0679	25.3072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4-5	44.0000	6.0125	16.7135	38.2339	60.9599	104.9599	26.8124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4-6	44.0000	6.0125	16.7135	38.2339	60.9599	104.9599	26.8124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4-7	44.0000	6.0125	16.7135	38.2339	60.9599	104.9599	26.8124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4-8	44.0000	6.0125	16.7135	38.2339	60.9599	104.9599	26.8124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4-9	43.7800	5.9825	16.6299	38.0427	60.6551	104.4351	26.6783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4-10	44.0000	6.0125	16.7135	38.2339	60.9599	104.9599	26.8124	개별호실
판매시설	1층	9군	1104-11	74.2700	10.1489	28.2117	64.5371	102.8977	177.1677	45.2581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2-1	45.2700	6.1861	17.1959	39.3375	62.7195	107.9895	27.5863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2-2	37.5700	5.1339	14.2710	32.6465	52.0514	89.6214	22.8941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2-3	51.5400	7.0429	19.5776	44.7858	71.4063	122.9463	31.4071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2-4	51.8300	7.0825	19.6878	45.0378	71.8081	123.6381	31.5838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2-5	35.7200	4.8811	13.5683	31.0390	49.4884	85.2084	21.7668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2-6	32.5800	4.4520	12.3756	28.3105	45.1381	77.7181	19.8534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2-7	29.9400	4.0912	11.3728	26.0164	41.4804	71.4204	18.2446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2-8	51.5800	7.0483	19.5928	44.8206	71.4617	123.0417	31.4315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5군	1203-1	43.5300	5.9483	16.5350	37.8255	60.3088	103.8388	26.5260	묶음군
판매시설	2층		1203-2	40.0100	5.4673	15.1979	34.7668	55.4320	95.4420	24.3810	
판매시설	2층		1203-3	53.6500	7.3312	20.3791	46.6193	74.3296	127.9796	32.6929	
판매시설	2층	6군	1203-4	49.3800	6.7477	18.7571	42.9089	68.4137	117.7937	30.0908	묶음군
판매시설	2층		1203-5	41.5000	5.6709	15.7639	36.0615	57.4963	98.9963	25.2890	
판매시설	2층		1203-6	45.9000	6.2722	17.4352	39.8849	63.5923	109.4923	27.9702	
판매시설	2층	7군	1203-7	28.8100	3.9368	10.9435	25.0345	39.9148	68.7248	17.5564	묶음군
판매시설	2층		1203-8	45.7100	6.2462	17.3631	39.7198	63.3291	109.0391	27.8547	
판매시설	2층		1203-9	56.6900	7.7466	21.5339	49.2609	78.5414	135.2314	34.5457	
판매시설	2층	8군	1203-10	53.3800	7.2943	20.2765	46.3847	73.9555	127.3355	32.5286	묶음군
판매시설	2층		1203-11	36.1400	4.9385	13.7279	31.4039	50.0703	86.2103	22.0230	
판매시설	2층		1203-12	55.0700	7.5253	20.9185	47.8532	76.2970	131.3670	33.5585	
판매시설	2층	10군	1203-13	43.0500	5.8827	16.3526	37.4084	59.6437	102.6937	26.2338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4-1	40.0100	5.4673	15.1985	34.7668	55.4326	95.4426	24.3813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4-2	53.6800	7.3353	20.3911	46.6460	74.3724	128.0524	32.7114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4-3	49.6900	6.7901	18.8755	43.1788	68.8444	118.5344	30.2800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4-4	49.7800	6.8035	18.9097	43.2570	68.9702	118.7502	30.3349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4-5	47.9400	6.5520	18.2107	41.6582	66.4209	114.3609	29.2136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4-6	56.0200	7.6562	21.2799	48.6793	77.6154	133.6354	34.1374	개별호실
판매시설	2층	10군	1204-7	44.0500	6.0205	16.7331	38.2780	61.0316	105.0816	26.8432	개별호실

※ 상기 호실별 공용면적에는 공용(복도, 홀, 계단실, 화장실 등)과 기타공용(기계·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휀룸, 공조실, 쓰레기집하장, 관리실 등) 및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로 공용과 기타공용 및 주차장 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용도	층	군	호실명(승인기준)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	2차	1차(7%)	2차(7%)	3차(8%)	4차(8%)	
								계약 시	계약 후 15일 이내	2027.03.05.	2027.08.05.	2028.05.04.	2028.09.05.	입점지정일
판매시설	1층	1군	1101-1	199,584,000	98,560,000	9,856,000	308,000,000	10,000,000	20,800,000	21,560,000	21,560,000	24,640,000	24,640,000	184,800,000
판매시설	1층		1101-2	215,784,000	106,560,000	10,656,000	333,000,000	10,000,000	23,300,000	23,310,000	23,310,000	26,640,000	26,640,000	199,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1-3	181,440,000	89,600,000	8,960,000	280,000,000	10,000,000	18,000,000	19,600,000	19,600,000	22,400,000	22,400,000	168,0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1-4	189,216,000	93,440,000	9,344,000	292,000,000	10,000,000	19,200,000	20,440,000	20,440,000	23,360,000	23,360,000	175,2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1-5	225,504,000	111,360,000	11,136,000	348,000,000	10,000,000	24,800,000	24,360,000	24,360,000	27,840,000	27,840,000	208,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1-6	178,200,000	88,000,000	8,800,000	275,000,000	10,000,000	17,500,000	19,250,000	19,250,000	22,000,000	22,000,000	165,0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1-7	250,776,000	123,840,000	12,384,000	387,000,000	10,000,000	28,700,000	27,090,000	27,090,000	30,960,000	30,960,000	232,200,000
판매시설	1층	2군	1101-8	254,664,000	125,760,000	12,576,000	393,000,000	10,000,000	29,300,000	27,510,000	27,510,000	31,440,000	31,440,000	235,800,000
판매시설	1층		1101-9	244,296,000	120,640,000	12,064,000	377,000,000	10,000,000	27,700,000	26,390,000	26,390,000	30,160,000	30,160,000	226,2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1-10	141,264,000	69,760,000	6,976,000	218,000,000	10,000,000	11,800,000	15,260,000	15,260,000	17,440,000	17,440,000	130,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1-11	148,392,000	73,280,000	7,328,000	229,000,000	10,000,000	12,900,000	16,030,000	16,030,000	18,320,000	18,320,000	137,4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1-12	183,384,000	90,560,000	9,056,000	283,000,000	10,000,000	18,300,000	19,810,000	19,810,000	22,640,000	22,640,000	169,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2-1	184,680,000	91,200,000	9,120,000	285,000,000	10,000,000	18,500,000	19,950,000	19,950,000	22,800,000	22,800,000	171,0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2-2	201,528,000	99,520,000	9,952,000	311,000,000	10,000,000	21,100,000	21,770,000	21,770,000	24,880,000	24,880,000	186,6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2-3	171,072,000	84,480,000	8,448,000	264,000,000	10,000,000	16,400,000	18,480,000	18,480,000	21,120,000	21,120,000	158,4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2-4	200,880,000	99,200,000	9,920,000	310,000,000	10,000,000	21,000,000	21,700,000	21,700,000	24,800,000	24,800,000	186,0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2-5	202,176,000	99,840,000	9,984,000	312,000,000	10,000,000	21,200,000	21,840,000	21,840,000	24,960,000	24,960,000	187,2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2-6	197,640,000	97,600,000	9,760,000	305,000,000	10,000,000	20,500,000	21,350,000	21,350,000	24,400,000	24,400,000	183,0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2-7	212,544,000	104,960,000	10,496,000	328,000,000	10,000,000	22,800,000	22,960,000	22,960,000	26,240,000	26,240,000	196,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2-8	198,288,000	97,920,000	9,792,000	306,000,000	10,000,000	20,600,000	21,420,000	21,420,000	24,480,000	24,480,000	183,6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2-9	198,288,000	97,920,000	9,792,000	306,000,000	10,000,000	20,600,000	21,420,000	21,420,000	24,480,000	24,480,000	183,6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2-10	213,192,000	105,280,000	10,528,000	329,000,000	10,000,000	22,900,000	23,030,000	23,030,000	26,320,000	26,320,000	197,4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2-11	243,648,000	120,320,000	12,032,000	376,000,000	10,000,000	27,600,000	26,320,000	26,320,000	30,080,000	30,080,000	225,6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2-12	251,424,000	124,160,000	12,416,000	388,000,000	10,000,000	28,800,000	27,160,000	27,160,000	31,040,000	31,040,000	232,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2-13	250,128,000	123,520,000	12,352,000	386,000,000	10,000,000	28,600,000	27,020,000	27,020,000	30,880,000	30,880,000	231,6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1	243,000,000	120,000,000	12,000,000	375,000,000	10,000,000	27,500,000	26,250,000	26,250,000	30,000,000	30,000,000	225,0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2	196,344,000	96,960,000	9,696,000	303,000,000	10,000,000	20,300,000	21,210,000	21,210,000	24,240,000	24,240,000	181,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3	187,272,000	92,480,000	9,248,000	289,000,000	10,000,000	18,900,000	20,230,000	20,230,000	23,120,000	23,120,000	173,4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4	191,808,000	94,720,000	9,472,000	296,000,000	10,000,000	19,600,000	20,720,000	20,720,000	23,680,000	23,680,000	177,600,000
판매시설	1층	3군	1103-5	243,648,000	120,320,000	12,032,000	376,000,000	10,000,000	27,600,000	26,320,000	26,320,000	30,080,000	30,080,000	225,600,000
판매시설	1층		1103-6	187,920,000	92,800,000	9,280,000	290,000,000	10,000,000	19,000,000	20,300,000	20,300,000	23,200,000	23,200,000	174,0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7	201,528,000	99,520,000	9,952,000	311,000,000	10,000,000	21,100,000	21,770,000	21,770,000	24,880,000	24,880,000	186,6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8	187,920,000	92,800,000	9,280,000	290,000,000	10,000,000	19,000,000	20,300,000	20,300,000	23,200,000	23,200,000	174,0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9	223,560,000	110,400,000	11,040,000	345,000,000	10,000,000	24,500,000	24,150,000	24,150,000	27,600,000	27,600,000	207,0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10	257,904,000	127,360,000	12,736,000	398,000,000	10,000,000	29,800,000	27,860,000	27,860,000	31,840,000	31,840,000	238,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11	224,208,000	110,720,000	11,072,000	346,000,000	10,000,000	24,600,000	24,220,000	24,220,000	27,680,000	27,680,000	207,6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12	290,304,000	143,360,000	14,336,000	448,000,000	10,000,000	34,800,000	31,360,000	31,360,000	35,840,000	35,840,000	268,800,000
판매시설	1층	4군	1103-13	270,216,000	133,440,000	13,344,000	417,000,000	10,000,000	31,700,000	29,190,000	29,190,000	33,360,000	33,360,000	250,200,000
판매시설	1층		1103-14	250,776,000	123,840,000	12,384,000	387,000,000	10,000,000	28,700,000	27,090,000	27,090,000	30,960,000	30,960,000	232,2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15	222,912,000	110,080,000	11,008,000	344,000,000	10,000,000	24,400,000	24,080,000	24,080,000	27,520,000	27,520,000	206,4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16	222,264,000	109,760,000	10,976,000	343,000,000	10,000,000	24,300,000	24,010,000	24,010,000	27,440,000	27,440,000	205,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17	217,080,000	107,200,000	10,720,000	335,000,000	10,000,000	23,500,000	23,450,000	23,450,000	26,800,000	26,800,000	201,0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3-18	209,304,000	103,360,000	10,336,000	323,000,000	10,000,000	22,300,000	22,610,000	22,610,000	25,840,000	25,840,000	193,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4-1	213,840,000	105,600,000	10,560,000	330,000,000	10,000,000	23,000,000	23,100,000	23,100,000	26,400,000	26,400,000	198,0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4-2	212,544,000	104,960,000	10,496,000	328,000,000	10,000,000	22,800,000	22,960,000	22,960,000	26,240,000	26,240,000	196,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4-3	238,464,000	117,760,000	11,776,000	368,000,000	10,000,000	26,800,000	25,760,000	25,760,000	29,440,000	29,440,000	220,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4-4	216,432,000	106,880,000	10,688,000	334,000,000	10,000,000	23,400,000	23,380,000	23,380,000	26,720,000	26,720,000	200,4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4-5	234,576,000	115,840,000	11,584,000	362,000,000	10,000,000	26,200,000	25,340,000	25,340,000	28,960,000	28,960,000	217,2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4-6	234,576,000	115,840,000	11,584,000	362,000,000	10,000,000	26,200,000	25,340,000	25,340,000	28,960,000	28,960,000	217,2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4-7	251,424,000	124,160,000	12,416,000	388,000,000	10,000,000	28,800,000	27,160,000	27,160,000	31,040,000	31,040,000	232,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4-8	233,928,000	115,520,000	11,552,000	361,000,000	10,000,000	26,100,000	25,270,000	25,270,000	28,880,000	28,880,000	216,6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4-9	250,776,000	123,840,000	12,384,000	387,000,000	10,000,000	28,700,000	27,090,000	27,090,000	30,960,000	30,960,000	232,2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4-10	251,424,000	124,160,000	12,416,000	388,000,000	10,000,000	28,800,000	27,160,000	27,160,000	31,040,000	31,040,000	232,800,000
판매시설	1층	9군	1104-11	325,296,000	160,640,000	16,064,000	502,000,000	10,000,000	40,200,000	35,140,000	35,140,000	40,160,000	40,160,000	301,2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2-1	166,536,000	82,240,000	8,224,000	257,000,000	10,000,000	15,700,000	17,990,000	17,990,000	20,560,000	20,560,000	154,2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2-2	158,760,000	78,400,000	7,840,000	245,000,000	10,000,000	14,500,000	17,150,000	17,150,000	19,600,000	19,600,000	147,0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2-3	191,808,000	94,720,000	9,472,000	296,000,000	10,000,000	19,600,000	20,720,000	20,720,000	23,680,000	23,680,000	177,6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2-4	196,344,000	96,960,000	9,696,000	303,000,000	10,000,000	20,300,000	21,210,000	21,210,000	24,240,000	24,240,000	181,8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2-5	149,688,000	73,920,000	7,392,000	231,000,000	10,000,000	13,100,000	16,170,000	16,170,000	18,480,000	18,480,000	138,6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2-6	136,728,000	67,520,000	6,752,000	211,000,000	10,000,000	11,100,000	14,770,000	14,770,000	16,880,000	16,880,000	126,6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2-7	119,232,000	58,880,000	5,888,000	184,000,000	10,000,000	8,400,000	12,880,000	12,880,000	14,720,000	14,720,000	110,4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2-8	199,584,000	98,560,000	9,856,000	308,000,000	10,000,000	20,800,000	21,560,000	21,560,000	24,640,000	24,640,000	184,800,000
판매시설	2층	5군	1203-1	177,552,000	87,680,000	8,768,000	274,000,000	10,000,000	17,400,000	19,180,000	19,180,000	21,920,000	21,920,000	164,400,000
판매시설	2층		1203-2	148,392,000	73,280,000	7,328,000	229,000,000	10,000,000	12,900,000	16,030,000	16,030,000	18,320,000	18,320,000	137,400,000
판매시설	2층		1203-3	182,088,000	89,920,000	8,992,000	281,000,000	10,000,000	18,100,000	19,670,000	19,670,000	22,480,000	22,480,000	168,600,000
판매시설	2층	6군	1203-4	193,104,000	95,360,000	9,536,000	298,000,000	10,000,000	19,800,000	20,860,000	20,860,000	23,840,000	23,840,000	178,800,000
판매시설	2층		1203-5	165,888,000	81,920,000	8,192,000	256,000,000	10,000,000	15,600,000	17,920,000	17,920,000	20,480,000	20,480,000	153,600,000
판매시설	2층		1203-6	183,384,000	90,560,000	9,056,000	283,000,000	10,000,000	18,300,000	19,810,000	19,810,000	22,640,000	22,640,000	169,800,000
판매시설	2층	7군	1203-7	110,808,000	54,720,000	5,472,000	171,000,000	10,000,000	7,100,000	11,970,000	11,970,000	13,680,000	13,680,000	102,600,000
판매시설	2층		1203-8	173,016,000	85,440,000	8,544,000	267,000,000	10,000,000	16,700,000	18,690,000	18,690,000	21,360,000	21,360,000	160,200,000
판매시설	2층		1203-9	215,136,000	106,240,000	10,624,000	332,000,000	10,000,000	23,200,000	23,240,000	23,240,000	26,560,000	26,560,000	199,200,000
판매시설	2층	8군	1203-10	147,744,000	72,960,000	7,296,000	228,000,000	10,000,000	12,800,000	15,960,000	15,960,000	18,240,000	18,240,000	136,800,000
판매시설	2층		1203-11	167,832,000	82,880,000	8,288,000	259,000,000	10,000,000	15,900,000	18,130,000	18,130,000	20,720,000	20,720,000	155,400,000
판매시설	2층		1203-12	187,920,000	92,800,000	9,280,000	290,000,000	10,000,000	19,000,000	20,300,000	20,300,000	23,200,000	23,200,000	174,0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3-13	158,112,000	78,080,000	7,808,000	244,000,000	10,000,000	14,400,000	17,080,000	17,080,000	19,520,000	19,520,000	146,4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4-1	156,168,000	77,120,000	7,712,000	241,000,000	10,000,000	14,100,000	16,870,000	16,870,000	19,280,000	19,280,000	144,6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4-2	176,904,000	87,360,000	8,736,000	273,000,000	10,000,000	17,300,000	19,110,000	19,110,000	21,840,000	21,840,000	163,8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4-3	198,288,000	97,920,000	9,792,000	306,000,000	10,000,000	20,600,000	21,420,000	21,420,000	24,480,000	24,480,000	183,6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4-4	198,936,000	98,240,000	9,824,000	307,000,000	10,000,000	20,700,000	21,490,000	21,490,000	24,560,000	24,560,000	184,2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4-5	191,808,000	94,720,000	9,472,000	296,000,000	10,000,000	19,600,000	20,720,000	20,720,000	23,680,000	23,680,000	177,6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4-6	208,008,000	102,720,000	10,272,000	321,000,000	10,000,000	22,100,000	22,470,000	22,470,000	25,680,000	25,680,000	192,600,000
판매시설	2층	10군	1204-7	194,400,000	96,000,000	9,600,000	300,000,000	10,000,000	20,000,000	21,000,000	21,000,000	24,000,000	24,000,000	180,000,000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상기 호실별 공급금액은 각 호실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호실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설계도서는 분양사업장 내 비치되어있으니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취득세(기본 세법상 등록세 통합),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상의 부득이한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오차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하여 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호실별 대지지분은 대지공급 당시 면적을 기준으로 각 용도별(공동주택, 판매시설) 전체 연면적 비율로 균등 배분한 것을 각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기계실, 발전기실, 관리실 등)은 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 영역과 판매시설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판매시설의 주차장은 지하1층에 위치합니다. • 지적공부 정리가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소수점 이하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점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점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점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보된 50% 금액을 입점일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본 사업부지 인근 건물(블록)의 확인되지 않은 개발 내용과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내용은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내용	방법	장소
청약 일시	2026. 08. 25.(화) 09:00~17:30	인터넷 청약	• 인터넷 청약 - 판매시설 홈페이지(https://더샵송도그란테르.kr) 팝업 안내
당첨자 선정	2026. 08. 26.(수) 14:00 이후	전산 추첨	• 당첨자 선정 : 공정 추첨 프로그램 유니피커(UniPicker) - https://www.unipicker.com
당첨자발표 일시		분양홈페이지 게시	• 당첨자 발표 (개별 확인) - 판매시설 홈페이지(https://더샵송도그란테르.kr)
계약기간	2026. 08. 27.(목) 10:00~16:00 (입장 기준)	견본주택 방문 계약	• 분양사업장(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송도동 37-2)
청약금 환불 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이체 환불	• 낙첨자 및 당첨 후 계약포기자 한정

청약신청

• 청약신청 자격

- 분양광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동법상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방법

※ 청약신청은 판매시설 분양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합니다.
※ 본 판매시설 청약은 '묶음군(1군~8군)청약'과 '개별호실(9,10군)청약'으로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당 총 1건[묶음군 1건 또는 개별호실 1건]만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청약 신청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묶음군 청약] '묶음군(1군~8군)' 청약신청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군 단위로 접수하며, 해당 군 내 포함된 전체 호실을 일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묶음군 청약자는 군 내 일부 호실만을 선택하여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자가 임의로 묶음호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개별호실 청약] '개별호실(9,10군)'은 특정 호실을 지정하여 청약할 수 없으며, 해당 군 내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1개 호실이 배정됩니다.

• 청약신청금 및 납부 계좌

구분	청약신청금	납부계좌 및 예금주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군 별	1,000,000원 (금일백만원)	수협은행 1130-0064-1705 예금주 : 케이비부동산신탁㈜	청약자명 + 연락처 뒤 4자리 (예 : 홍길동 전화번호 뒤 4자리가 1234의 경우, "홍길동1234"로 입금)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금에서 해당 호실 청약신청금을 제한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해당 지정된 계좌에 정해진 방법으로 청약신청금을 입금하고, 반드시 당사 청약 신청 절차에 따라 청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금은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상기 지정계좌 입금 외에는 어떠한 형태도 청약신청금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입금 시 반드시 청약자 성명과 연락처 뒤 4자리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타인 명의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금 입금자, 청약 신청자가 일치하는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자 명의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 필히 분양사업장(견본주택) 에서 해당 건축물, 호수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호수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첨자 및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전 반드시 본 모집공고를 숙지하시어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당첨자 발표 이후 환불 기간에 청약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 시 입력한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인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금 환불 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금 환불 일정은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일시 : 2026.08.26.(수) 14:00 이후
- **방식 : 온라인 당첨자 공정 추첨 프로그램 유니피커(UniPicker)를 통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중 유효한 신청자(마감시간 전에 온라인 청약신청과 청약신청금 입금을 완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묶음군(1군~8군)' 당첨자: 해당 군 내 전 호실을 계약해야 하며, 일부 호실만 선택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일부 호실 포기 시 당첨 무효처리)
  - '개별호실(9,10군)' 당첨자: 해당 군 내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1개 호실이 배정됩니다.

• 기타사항

- 당첨자 확인은 당첨자 발표 일시에 분양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포기로 간주하며, 해당 호실은 추후 분양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은 무효 되고 계약은 해제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 등을 통한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일시 : 2026.08.27.(목) 10:00~16:00 (입장기준)
- 계약체결 장소 : 분양사업장(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송도동 37-2)]
- 계약금 납부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102동 1층 01호를 계약하는 홍길동 → 1102101홍길동)

구분	은행명	납부계좌	예금주
판매시설 분양대금 납부계좌	수협은행	1130-0064-1705	케이비부동산신탁㈜

-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 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분양대금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의하여 본사업의 분양사업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에서 분양수입금을 관리합니다.

계약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 계약자 인감도장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부동산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부동산 계약용) •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 모바일신분증 불가 • 외국인일 경우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법인	•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부동산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및 사업자등록증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1통)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 외국 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 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1통(용도: 부동산 계약용),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분양사업장 내 비치)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본인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인근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판매시설,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합니다.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판매시설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30% 범위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호실별로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기간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와 대출 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가 지정한 입점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되, 입점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판매시설의 입점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변경된 입점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사가 부담하고, 입점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 시공업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 시공업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본 판매시설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호실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시공업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적격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시공업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대출금융 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판매시설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제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사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 계약자는 입전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입점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행위탁사, 시공업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 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보증은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계약자 개인별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점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도금 대출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 시공업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본 판매시설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업장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실 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준공 및 입점 예정일 : 2029년 8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 입점일이 입점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점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 및 입점 일정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점지연 보상금액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실입점 지정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점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는 입점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 금액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14일 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유보된 50% 금액을 입점일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금 납부 등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수인·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귀책 사유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일반 유의사항</td><td>•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형별 면적(㎡)X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 호실 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 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소수점 이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전자주소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 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점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점포 운영에 관한 일체(점포관리, 영업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 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작성 및 건물소유권 이전은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1~2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담배소매인 지정 등의 영업관련 인·허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담배소매인 지정업종은 슈퍼마켓, 편의점으로 제한됨) • 분양사업장은 일정 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한 뒤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연수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자의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이용 계획은 입점 후 관리주체에서 임의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는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해당 호실의 공급면적 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부터 준공 전·후 계약자(입점자)는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후 최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여 법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관련법률에 의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에 포함되며, 내진능력은 내진 Ⅰ등급으로 계획되었으며, 향후 실시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하며,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분부터 시행위탁사는 계약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계약자는 사업자등록 시 시행위탁사에게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 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 환급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입점 후 입점자는 입점자간 합의 하에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구조적으로 판매시설과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판매시설은 공동주택과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판매시설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 유인물에 표기된 도로 등의 주변개발 조성계획[도로망, 철도(지하철) 등 각종시설]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승인 도서에 준하며, 분양사업장 내에 비치된 승인도서 확인 등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사업장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 내 설치된 모형도, CG(조감도, 투시도 등)가 포함된 카탈로그 등 인쇄물, 각종 홍보물 상의 주변 현황 및 기반시설, 식재, 시설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내 설치된 모형도, CG,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공 시 단지 내외부의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 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 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의 설계도면, 주요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도면 등에 표시된 시설 및 주변 현황들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 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모형도(주변 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 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호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 당 사업부지 내에는 입점자 및 외부 지역 주민이 사용 가능한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 통제 또는 통제를 위한 휀스 등의 차단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과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는 지상1층에 위치하며,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호실에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1층 음식물 및 쓰레기 투입구는 공동주택의 쓰레기 투입구와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습니다.
• 착공 후 현장에서의 여건이나 지반 현황 등의 상황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고,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 판매시설 내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 시 품절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 후 계약자(입점자)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 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수인,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및 도로, 교통, 주변 단지의 신축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 및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구조물, 색채, 외장재료, 창호 형태 및 재질 등), 단지명 사인물,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공용화장실, 난간의 디테일, DA(Dry Area) 등 외부시설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계약자(입점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추후 판매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소음, 냄새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창호 형태, 외부 색채, 외벽 로고 사인, 외벽 마감, 식재, 바닥 포장, 단지 내 조경 공간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위치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점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외부 시설물(가로등, 가로수, 경관조명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써, 입점자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 비용은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지역열원 배관, 하수도 배관, 전기/통신 인입 배관/배선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전체(공동주택, 판매시설)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또는 이전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법령에 따라 관련 세금(취득세 등)이 중과 또는 가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판매시설의 입점 시, 선행 행정행위(사업계획승인)에 부가해서 이루어지는 후행 행정행위(사용승인 등)에 대하여 부당한 방해 행위 등으로 지연을 초래할 경우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일반계약자 및 사업주체에 발생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을 수인·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입점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지정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고, 입점 시 및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입점자 상호 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은 공동주택, 판매시설이 복합된 시설임을 인지하고 향후 복도 등 공용부분에 타 용도의 배관/배선들이 통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된 점포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점포관리, 영업 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와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 사항 등은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입점자)들은 입점지정 최초일까지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관리단 및 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의 입점 후 하자 등으로 인한 계약자 손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단지 내 판매시설 부대시설 이용으로 인해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호실별 부대시설의 간섭 위치 등에 대해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내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2층 옥외에 판매시설용 공조실(냉각탑, 배기휀 등) 및 부대시설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인접 호실은 소음, 진동, 수증기, 냄새 및 시선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G5-2블록(공원)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은 관계기관의 의견 및 설계, 시공 과정에서 공원의 지형 및 동선,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의 종류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5-2블록(공원) 내 관리사무소/카페테리아, 화장실1, 화장실2/매점이 설치되며, 건축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결브릿지는 계획 단계 이전으로, G5-1블록, G5-11블록, G5-2블록, G6-1,2블록의 진출입 계획(위치, 계획고 등), 연결브릿지 선형 및 형태는 관계기관의 의견 및 설계,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6-1,2블록(공원)은 조성계획 이전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공 과정에서 공원 내 건축물, 연결브릿지, 공원의 지형 및 동선,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지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5-2블록(공원) 및 G6-1,2블록(공원)은 사업시행자와 인·허가청 간의 협의에 따라 세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송도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식재조성공간, 보행자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대지경계선 안쪽 전면 공지는 공공(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지상권 또는 사용대차계약 등을 설정하고 유지관리는 공공에서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판매시설, 공동주택(아파트)의 대지지분은 "하나의 단지로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간 대지 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로 공급됩니다.</td></tr>
<tr><td>일반 유의사항</td><td>• 송도국제업무단지 F9~F12블록, G6-1, G6-2블록 등 주변 필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될 수 있으며, 주변개발 시 현재 조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송도국제업무단지 G5 블록은 6개 블록이 각각 별개의 사업계획 승인(G5-1, G5-11) 또는 건축허가(G5-3, G5-4, G5-5, G5-6)를 득하여 공급되는 독립된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각 블록별, 상품별(주거, 오피스텔 등)로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 조경 및 공용부분은 해당 블록, 상품의 시설로서 블록 또는 상품 간 시설 교차 이용 및 공동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타 블록 또는 상품의 시설에 대한 이용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수분양자는 각 블록별 시설 규모 및 사양의 차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연결 통로는 공원시설물로서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램프는 1개소로 공동주택과 공동으로 운영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송도 지역의 강풍 등으로 인해 매장 위치에 따라 출입문 개폐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 외부(공원 포함)는 당 사업부지가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로서 해당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청의 계획에 따라 시설 및 형태, 패턴, 재질 식재,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td></tr>
<tr><td>단지 내부 여건</td><td>•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공개공지 등) 배치구조(부대편의시설, 관리시설), 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 공간(식재 및 시설물 설치구역, 휴게소)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점포는 소음 등 영업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세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카탈로그 등) 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점자는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비상차도, 보도 등)의 경사도는 주변 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인접 외부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의 주차대수는 87대로 계획되어 있고, 지하1층은 공동주택, 판매시설 주차 공간으로 영역을 구획하여 사용하며, 지하2층은 공동주택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함을 인지하고,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제한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내부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카셰어링 주차구획(1개소)이 설치됩니다. • 차량 진출입구 경사로 인근 매장의 경우 차량 출입으로 인한 소음과 야간 불빛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설별 주차장 영역을 구분하였으나, 공동주택 이용자가 동선 계획 상 판매시설 주차장의 통로를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 함에 있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폐기물용 자동집하시설은 입점자 편의시설이므로 관리비(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쓰레기 투입구 사용 시기는 운영주체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 및 도시가스용 정압기,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개폐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신 후 청약 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 하수, 우수, 도시가스, 전기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A, 환기구,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해 매장 전면부가 간섭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관련도면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 판매시설의 매장은 지상1, 2층에 설치되어, 접근 동선은 공동주택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G5-1블록과 G5-11블록 간 연결통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하부 매장은 채광, 환기, 인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td></tr>
<tr><td>설계 관련</td><td>• 야외조경용 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모형도, 단지 배치, 단지내 도로선형, 조경,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점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 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시공 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초 계획과 동등한 것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호실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 상 일부 호실은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 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 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 • 당해 지구 내·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분양사업장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상품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점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난간 포함)의 형태, 색상, 재질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의 공용부 마감은 바닥 타일, 벽 타일 및 도장 등이 적용되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외부 입면 디자인에 따른 구조물이 각 점포에서 간섭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점포별로 내부에 판매시설 및 주거동 구조를 위한 기둥이 위치하며, 기둥의 크기, 형태, 위치는 점포별로 상이하므로 내부 기둥에 의해 실 사용 면적 감소 등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구조물로 인해 인접 점포는 외부 창호에 간섭이 있으니 확인하시어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간판 위치는 심의 기준에 따라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 형상 및 지상층 조경계획에 따라 외부에서 간판 등 호실의 인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 판매시설은 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할 수 없고 관리 규약에 따라 사용됩니다. • 외부에는 우수 처리를 위한 트렌치가 설치되며, 점포의 창호 부근에는 우수 처리를 위한 배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판매시설의 시공 및 구조 등의 상세 검토에 따른 단면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및 점형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별 위치에 따라 공용화장실 이용 동선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하부에 계획된 판매시설의 특성상 매장 앞쪽 및 내부 기둥 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내부 구획 현황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의 복도는 공용시설로 매장 전용으로 임의 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 옥상 일부 구간에 옥상 조경이 계획되며,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인원의 접근으로 인근 점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매장 전면에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높이, 사양, 범위,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매장은 계단, 환기구(DA), 맘스스테이션 등의 시설물로 인해 인지성이 떨어지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도면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의 지역난방 공급계획에 따라 각 호실별 냉/난방설비는 지역열원이 적용되며, 동시에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지열열원)가 적용되어 냉/난방설비 열원이 이원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실별 냉/난방설비 열원(지역열원/지열열원)이 상이하게 적용되며, 입점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원화된 열원 방식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요금, 관리비, 유지관리비 등의 산정 기준이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td></tr>
<tr><td>기계전기 설비</td><td>• 각 점포별로 3상 380V/220V 공급되고, 분전반 내 차단기는 1상 220V 적용되며, 전기용량은 점포별 전용면적으로 약 180VA/㎡ 공급합니다. 점포별 증설이 필요시에는 관리주체와 협의 후 한전에 추가 전기사용 신청 후 한전의 책임분계점에서 점포까지 입점자 부담으로 증설할 수 있습니다.
• 점포 내 전기분전반이 설치되며, 전기계량기(한전 지급 품목)는 지정장소에 개별 점포별 통합 설치되고, 전등, 콘센트, 통신포트가 점포 내 기본 설치됩니다.
• 외부 간판용 전기배선은 점포 출입문 상부에 위치하며, 간판 설치를 위하여 전기배선 인출에 따른 별도의 배선 및 천공은 입점자(수분양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간판 운용을 위한 타이머나 제어설비는 필요시 입점자의 공사분 입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위치확인 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상발전기는 건물 정전 시에 공용부 비상조명 및 승강기 운전에만 공급됩니다. 비상발전기 전원은 점포별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 판매시설의 각 호실별 냉/난방설비는 지역열원 또는 신·재생에너지(지열열원)로 공급되며, 입점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각 호실별 온도조절기 및 계량기가 설치되므로 호실별 냉난방 제어 가능합니다. (단, 중앙 제어에 따른 호실별 냉난방 개별 선택은 불가) • 개별 냉/난방기 및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 및 전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외부에 임의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 외부의 복도에는 냉난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판매시설 각 실에는 급수설비, 배수설비, 가스설비 각 1개소씩 설치되며, 급탕 및 후드는 입점자 공사분입니다. 설치 위치는 입점 후 시공성, 사용성을 고려하여 임의 위치에 설치되오니 필요 시 입점자 공사분으로 배관연결(가스메타기 포함)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 각 호실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장비포함)은 입점자 공사분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 각 실에는 주방배기를 위한 덕트가 실내 설치되고, 시공성, 사용성 고려하여 임의 배치되오니 필요 시 입점자 공사분으로 덕트연결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 공조실 내 공용 탈취 설비가 설치되며, 주기적인 유지관리는 판매시설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상2층에 공조실(배기휀, 냉각탑 등)이 위치하며, 공조실과 인접한 일부 호실에서 소음, 진동, 수증기, 냄새 및 시선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 2층에 부대시설용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점포에서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국전력공사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아파트 2.8m*2.8m 1개소, 비주거 2.8m*2.8m 1개소]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및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td></tr>
<tr><td>각 점포별 유의사항</td><td>• 판매시설의 내부 마감재는 아래와 같이 계획되고 층별로 마감재가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수인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바닥</th><th>벽</th><th>천장</th></tr>
<tr><td>슬래브면 PVC타일</td><td>도장마감</td><td>지정텍스마감</td></tr>
</table>
• 바닥마감은 입점 후 마감을 고려하여 슬래브 면에 PVC타일을 시공하므로, 외부 및 복도와는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판매시설 내부 마감재 외 기타 마감재로의 변경 등 추가적인 인테리어는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공 중에 샘플실 및 현장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 점포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 전면부가 외부 장식물에 의해 가려질 수 있으니 단지모형 및 상가 모형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일부 호실은 공용복도에서 출입이 불가하므로 설계도면 및 상가 모형 등을 확인하시어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호실 전면부 외부 테라스의 폭은 개별 호실마다 상이하므로 단지 모형 및 상가 모형 등을 확인하시어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점포별 구성, 형태, 기둥 노출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 점포 및 공용의 설비, 전기, 소방, 가스 배관등이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으로 경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천정에 설치되는 전등, 각종설비배관 등의 설치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인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별 설계 주방배기풍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입점자 공사분으로 추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별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및 부속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별 전면 바닥마감과 그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소방법 등)에 따라 일부 호실 내외부에 설비(소화전, 분전함, 방수구 등)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내·외부 마감재의 사양은 점포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허가도서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점 후 입점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별 층 및 향, 외부 조경, 각종시설물 등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별 층고와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점포는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호실은 비상구, 부속실 또는 발코니가 해당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해당법규에 의해 입점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 각 점포별 설치되는 간판 및 입간판은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에 따라 위치 및 층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호실 내부, 호실간, 호실 전면에 설치되는 방화벽 및 방화셔터를 포함한 관련 설치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지구단위 계획 상 세부 불허용도</td><td>• 아래 지구단위계획상 불허용도 시설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구분</th><th>용도</th></tr>
<tr><td>허용용도</td><td>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다목)</td></tr>
<tr><td>불허용도</td><td>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td></tr>
</table></td></tr>
</table>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당사에 대한 채무이행 및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확인

- 본 건축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겸 수익자 송도국제도시개발(유), 토지를 수탁받은 매도인 겸 수탁자(신탁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 및 시공업체 ㈜포스코이앤씨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는 6개 블록(송도국제도시 G5-1, G5-11, G5-3, G5-4, G5-5, G5-6)별로 개별 공고되나 실질적으로 단일 계약에 의거한 통합 사업임을 확인하며, 각 블록의 분양수입금이 전체 공사비 및 사업비로 통합 관리·전용됨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본 특약사항은 분양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①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예금계좌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본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와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가 체결한 신탁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됩니다. ③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④ 매수인(수분양자)은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업체(㈜포스코이앤씨) 또는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있으며, 시공업체 교체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업체(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 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업체(㈜포스코이앤씨) 또는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있습니다. ⑥ 매도인 겸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는 형식적인 시행사로서 사업주체(건축주) 및 분양권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을 위탁자 겸 수익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는 이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 및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 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나. 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점지정일(또는 입점지정기간) 통지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자	전기감리자	소방감리자	통신감리자
회사명	㈜나로이앤씨	㈜건일엠이씨	해성종합기술㈜	㈜이룸이앤씨
금액	3,188,975,900	771,290,840	1,060,191,128	132,000,000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본 단지는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이 복합된 단지로서,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감리 용역 계약이 통합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업관계자 명칭

구분	분양사업자, 사업주체(수탁사)	위탁사(시행사)	시공업체	분양대행사
회사명	케이비부동산신탁㈜	송도국제도시개발(유)	㈜포스코이앤씨	㈜엔티파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역삼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상가 에이동 3층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죽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4, 10층 (청담동, 삼강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1348237	110114-0037603	174611-0002979	110111-1257165

※ 분양대금의 관리자 겸 분양사업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구분	내용
등록업자 (부동산개발업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129(2008년 4월 16일),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인·허가 사항	• 제2025-도시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 (2025. 10. 2.)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구분	내용
소유권 이전 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 등기
분양대금 관리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용도, 규모	①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15 (G5-11BL) ② 지목 : 대 ③ 용도 : 판매시설, 공동주택(아파트) ④ 규모 : 지하 2층~지상 20층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분양광고 및 분양사업장(견본주택)에 게시하였습니다.

판매시설 82실

분양문의 **1566-5540**

공급대상물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15(G5-11BL)

판매시설 분양홈페이지 : https://더샵송도그란테르.kr
분양사업장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송도동 37-2)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분양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사업장(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업장(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